

서울특별시 제2시민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32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인 제2시민청은 권역 시민청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율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전시, 공연, 관람, 시정책 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현하는 시민이 주인인 공간으로서,
- 나. 시정참여 및 소통의 핵심기능과 지역 활동기반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리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제2시민청 운영사무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제2시민청 조성계획 수립('17.1.31)
 - 제2시민청관련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 방침('17.9.14)
 - 서울특별시 시민청(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권역 시민청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율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전시, 공연, 관람, 시정책 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현하는 시민공간으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시정참여 및 소통의 핵심기능과 지역 활동기반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풍부한 경험과 운영 전문성이 필요함.
- 아울러, 제2시민청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청과 연계된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소통 문화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만족도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 사업목적

- 제2시민청 업무가 권역시민청의 시범적인 사업으로서 인근주민의 자율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전시, 공연, 관람, 시정책 안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제2시민청(2개동 2,3층 / 550㎡내)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 전시, 공연, 시정홍보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기획과 전시총괄, 시설대관업무 등
- 그 밖에 권역 시민청의 특화사업 (지역커뮤니티 허브 역할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강북구 우이동 57-32 외 (우이신설 경전철 슬발역사)
- 규 모 : 지상2,3층, 연면적 550㎡ 이내
- 활용용도 : 지역 시민참여형 전시, 관람, 문화복합 소통공간
- 위치도 : 별첨 1 참조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018.1.1 ~ 2020.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청(신청사 지하)의 현운영자로서, 관련노하우 축적 및 네트워크 구성가능 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산출 근거	
2018년	1,174,391	민간위탁금	인건비	213,696
			사업비	586,600
			관리비	374,095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17년도 제6차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17.9.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청(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청(市民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시민청(市民聽)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 2016.1.7.]

1. "시민청(市民聽)"(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18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청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민청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09.7.30., 2014.5.14.>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요청 사항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 박성운 (☎2133-6418)

【 별첨1 】

시설 위치도

(S=1:10,000)

